

— 구미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·공제등의가입조례(안) —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인감발급 민원담당공무원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주의, 실수가 민원사고로 이어져 재정손실은 물론 사기가 크게 저하되고 있어
- 인감증명법시행령 개정으로 재정보중보험을 가입함으로써 인감사고로부터 위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제정 조례안임.

3. 주요내용

- 인감담당공무원의 범위를 인감의 신고(변경신고포함)업무, 인감증명발급업무,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로 정함.(제2조)
- 보험의 가입은 매년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해 보험에 가입하되 보험가입금액은 1인당 최저 300,000천원 이상 가입(제3조)
- 보험료의 지급은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.(제4조)
- 인감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관계보험회사에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되, 변상책임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담당 공무원에게 변상할 수 있도록 규정 함.(제5조)

4. 참고사항

-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(보험·공제등의 가입)
- 경상북도 총무12130-10230(2003. 01. 29)호의
인감담당공무원보험·공제등의가입조례 준칙안

5. 검토의견

- 경상북도 인감담당공무원보험·공제등의가입조례 준칙안에 의거
구미시 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·공제등의가입조례 제정안 임.
- 2002. 12. 31 대통령령 제17867호로 개정·공포된 인감증명법시행령
제20조의 “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 소속직원의
인감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등에
가입”하도록 규정하고 있어,
- 인감담당공무원의 범위, 보험가입방식, 보험가입금액, 보험료의 지급
등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제정 조례안으로서 타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
사항은 없음.